의안번호	제 462 호					
의 결	년 월 일					
연 월 일	(제 회)					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6월 24일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

의 안 번 호 462

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장

제안연월일 : 2020년 6월 24일

1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 규정을 폐지하고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 규칙」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목적(안 제1조)
 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·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규정
- O 자문위원의 위촉(안 제2조)
 - 자문위원의 위촉방법 및 위촉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O 자문위원의 자격기준(안 제3조)
 -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자격기준을 규정함
- O 자문위원의 직무(안 제4조)
 - 자문위원이 위촉기간 중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

- O 자문위원의 회의 종류 및 소집방법(안 제5조)
 - 자문위원의 회의 종류 및 소집방법에 관하여 규정함
- O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(안 제6조)
 - 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, 자문 등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함
- 자문위원의 해지사유(안 제7조)
 - 자문위원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규정함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 - O 입법예고: 해당없음
 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 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·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문위원의 위촉)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자문·지원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활동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·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④ 자문위원을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3조(자격기준) 자문위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 - 1.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
 - 2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
 - 3.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4. 그 밖에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

- **제4조(자문위원의 직무)** ①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특수분야 ·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활동
 - 2. 도의회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문ㆍ지원
 - 3.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
 - 4. 그 밖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식 · 정보교환 등
 - ② 자문위원은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자문위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5조(회의) ① 자문위원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 - ③ 위원회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- 제6조(수당의 지급)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「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.
 - ②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·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촉의 해지)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 하여야 한다.

- 1.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- 3.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- 4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.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5. 자문위원이 자진 사임하거나 위촉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문위원 위촉 요청서

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 위촉을 요청합니다.

분 야 별											
대상업무							소지자격				
자문위원	성	명	(한	자)	생년월일	•		직	업		
, , , , ,	주	소						전화	번호		
위촉기간		ı	₫ ⁴	월 일	부터	۲] 4	실	일(월)	
위촉이유											

- ※ 첨부서류
 - 이력서
 - 자격증사본
 - 경력증명서

년 월 일

○ ○ 위원회 위원장 (확인 또는 서명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위촉기간 연장 요청서

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.

분 야 별						
대상업무				소지자격		
자문위원	성 명	(한 자)	생년월일		직	언
	주 소				전화	번호
위촉기간	당 초	~		연 장		~
연장사유						

년 월 일

○ ○ 위원회 위원장 (확인 또는 서명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검토보고서

대상업무 (안건)명	검	토	사	ठॅो	검	토	결	과	

※ 직무성격에 따라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가능

년 월 일

○ ○ 위원회 자문위원 (인)

○ ○ 위원회위원장 귀하